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9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조승래・이정문・박정현

황정아 · 김용만 · 한준호

박상혁 • 이병진 • 노종면

서영석 · 장종태 · 위성곤

박지원 · 정준호 · 윤호중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과 달리,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제3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국회가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상급 기관이 해당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회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가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1.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 2.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 3.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 또는 방해한 자
- 4.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 5.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어느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 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다. <신 설> 1.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신 설> 2.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신 설> 3.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 또는 방해한 자 4.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신 설>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5.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의 출 <신 설> 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 한 자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 <삭 제> 정인 ·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 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

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